

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5. 9 (화) 이만재 의원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06. 6. 22(목)

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2(목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6.22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이만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의 개정(2005.8.4, 법률7670호)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(2006. 2. 8 대통령령 제19322호)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동 기준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(안 제2조)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 기준이 평창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 내용은

-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,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동 기준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

다.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 : 평창군의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 끝.**

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5. .

제안자 : 이만재 의의원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개정(2005. 8. 4, 법률 7670호)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(2006. 2. 8 대통령령 제19322호)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동 기준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2조)

나.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함(안 부칙)

다.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문 : 불임

나. 예산조치 : 제1회추경 계상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"회기수당"을 "월정수당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 월정수당(월액) : 년 12,660천원(월 1,055천원)
2. 의정활동비(월액) : 년 13,200천원(월1,100천원)

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안 제2조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다음 조례의 개정) 「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5조의 2를" 제15조의 3"으로 한다.

제2조 제2항 중 "회기수당"을 "의정활동비"로 한다.

제4조 제2항 중 "회기수당"을 "의정활동비"로 한다.

제5조 제2항 중 "제15조의2제2항"을 "제15조의3제2항"으로 한다.

[별표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 등 정 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
- 비 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2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공임	일 비	숙박비	식 비	준 비 금		
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장 부의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- 비 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한다.

[별표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 등급 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
- 비 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2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분	항공임	일비	숙박비	식비	준비금		
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장 부의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- 비 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한다.

관계법규 발췌

「지방자치법」

제32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2 (상해·사망등의 보상)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(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15조 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5에 의한 금액
2. 여비 : 별표7 및 별표8에 의한 금액
3. 월정수당 :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,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